

제 279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1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I . 검토경과	1
II . 제출근거	1
III .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출·세입처리상황	2
5. 일반 회계 세입결산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5
9. 계속비 결산	8
10. 예비비 지출	10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12
IV . 기금결산	13
V . 채권액결산	15
VI . 채무액결산	15
VII . 보조금결산	16
VIII . 기타의견	16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4. 5. 3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4. 5. 31.
- 의안번호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55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56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 · 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83,777	990,665	772,309	218,356
일반회계	892,990	897,793	699,782	188,010
특별회계	90,788	92,872	72,527	20,345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83,777	996,395	990,665	675	5,056	100.7	99.4
일반회계	892,990	902,891	897,793	675	4,424	100.5	99.4
특별회계	90,788	93,504	92,872	0	633	102.3	99.3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16,505	167,273	983,778	772,309	170,979	4,694	35,796
일반회계	741,584	151,405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70
특별회계	74,921	15,867	90,788	72,527	11,884	51	6,326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990,665	772,309	218,356	73,943	55,809	40,749	4,694	40,124
일반회계	897,793	699,782	198,010	67,324	53,452	37,841	4,643	31,714
특별회계	92,872	72,527	20,346	6,619	2,357	2,908	51	8,410

5. 일반 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4)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892,990	902,891	897,793	675	4,424
	지 방 세 수 입	39,569	42,050	39,970	576	1,504
	세 외 수 입	24,162	31,370	28,425	99	2,847
	경세외수입	11,804	14,660	14,463	—	197
	임세외수입	11,266	14,563	12,360	95	2,10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93	2,147	1,602	3	542
	지 방 교 부 세	308,243	308,659	308,659	—	—
	조 정 교 부 금 등	33,352	33,553	33,553	—	—
	보 조 금	231,657	234,132	234,132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256,007	253,127	253,054	—	73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84)

○ 총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69
의회운영위원회	1,137	953	—	—	184
총 무 위 원 회	387,787	323,447	51,569	2,639	10,129
산업건설위원회	504,066	375,382	107,525	2,004	19,156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69
산업건설 위원회	소 계	504,066	375,382	107,525	2,004	19,156
	안 전 총 괄 과	11,810	8,835	1,567	15	1,393
	산 립 과	50,255	35,918	11,739	170	2,428
	환 경 과	31,646	29,404	1,391	246	606
	건 설 교 통 과	129,250	95,711	27,098	8	6,433
	도 시 건 축 과	70,055	33,610	33,070	83	3,293
	농 업 기 술 센 터	131,111	106,651	18,980	1,445	4,035
	농 업 축 산 과	31,195	28,260	1,090	386	1,460
	농 업 기 술 과	58,255	50,293	4,618	1,047	2,298
	행 복 농 촌 과	41,660	28,098	13,273	12	277
	수 도 사 업 소	41,140	39,717	1,030	1	391
	체육시설사업소	37,061	23,825	12,651	37	548
	거창사건사업소	1,739	1,711	-	-	29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22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 결 정 액 (A)	수 납 액 (B)	정리 보류액(C)	마 수 납 액 (D=A-B-C)
합 계	90,788	93,504	92,872	0	632
공 기 업	62,236	63,331	63,076	0	255
의 료 급 여 기 금	1,050	1,056	1,056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30	0	0
주 차 장 관 리	613	1,102	785	0	316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11,050	11,388	11,328	0	60
수 질 개 선	9,789	9,787	9,787	0	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722	1,726	1,726	0	0
농 업 발 전 자 금	4,298	5,083	5,083	0	0

○ 세 출(결산서 p22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F=A-B-C-D)
계	90,788	72,526	12,439	51	6,327
공 기 업	62,236	48,653	8,884	-	4,698
의 료 급 여 기 금	1,050	1,030	0	5	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0	0	0
주 차 장 관 리	613	333	0	0	28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11,050	9,010	2,000	0	41
수 질 개 선	9,789	9,727	555	46	15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722	710	1,000	0	12
농 업 발 전 자 금	4,298	3,033	0	0	1,26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03)

□ 이 용

○ 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5)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5)

□ 전 용

○ 일반회계(결산서 p30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8건	981	77	77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5)

□ 이 체

○ 일반회계(결산서 p30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00건		65,243	65,243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결산서 p30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8건		11,672	11,672	

검 토 의 건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그쳐야 하며,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조정·편성 후 집행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8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전용의 엄격한 허용으로 전용사업이 8건으로 감소시킨 점은 바람직해 보이며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126)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17건)	60,730	21,848	38,733	149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2,622	2,340	207	75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14,679	5,588	9,091	0
문화관광자원개발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전환사업)	3,591	602	2,988	0
빠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전환)	3,362	885	2,476	0
백두대간 거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전환사업)	368	367	0	0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2,608	126	2,474	8
산림레포츠파크 지역특화형 숲속의 집 조성사업(기초계정)	1,200	1,192	0	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전환)	1,596	83	1,513	0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9,401	115	9,286	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1,748	343	1,347	58
신활력플러스사업	5,455	2,140	3,315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2,460	1,360	1,100	0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4,220	743	3,476	0
기초생활거점육성(농촌협약-마리면)	285	85	200	0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6,250	5,684	566	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거창읍)	603	112	491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285	82	203	0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7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331)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21건	6,220	4,221	912	1,085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3월 운영비 편성	3	3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12	12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3월 운영비 편성	197	197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1,168	1,168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3월 운영비 편성	11	11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370	37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93	93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22	22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3월 운영비 편성	40	4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108	108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	90	90	0	0
안전총괄과	재 해 대 비	6.27. ~ 7.19. 호우피해 재난복구	133	133	0	0
산 립 과	산림생태 보호	7.9. ~7.19. 호우피해 재난복구	1,294	64	597	633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건설교통과	소규모 지역개발	호우피해 재난복구(예비비)	937	879	34	24
건설교통과	하 천 정 비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가천천(지방하천) 재해 복구	393	0	282	112
농업축산과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농업인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한 3개월분(1월~3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195	189	0	7
농업기술과	고 식 미 생 산	벼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	330	165	0	165
농업기술과	고 식 미 생 산	4월 개화기 과수, 전작, 채소 등 농작물 냉해피해로 인한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597	593	0	4
농업기술과	고 식 미 생 산	농작물 우박 피해농가 복구지원	34	34	0	0
농업기술과	고 식 미 생 산	6월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30	27	0	3
농업기술과	농산물마케팅 고도화	6월 수확기를 앞둔 과수 우박피해로 인한 피해농가 가공용 사과수매지원	163	25	0	138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건정책과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비 편성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과정 중 발생한 수탁자 협약 포기에 따른 직영 운영비이며 건설교통과, 농업기술과의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155, p172)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306	596,090	170,979	
명 시 이 월	106	231,704	73,943	일반회계 94건 담주변지역특 1건 상수도특 7건 하수도특 4건
사 고 이 월	164	281,097	55,809	일반회계 154건 산업단지 1건 상수도특 6건 하수도특 3건
계 속 비 이 월	36	83,289	41,227	일반회계 32건 산업단지 1건 하수도특 3건

검 토 의 건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2023년 예산의 17.38%가 이월되어 이월액 감소를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이 필요함.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기금결산(결산서 p349)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나=㉡-㉠)	조 성 액(㉡)	사 용 액(㉢)	
계(9종)	148,624	△54,091	4,173	58,264	94,533
식 품 진 흥 기 금	134	△1	50	51	133
중소기업육성기금	5,676	△539	100	639	5,137
사 회 복 지 기 금	2,465	59	91	32	2,523
재 난 관 리 기 금	3,400	84	796	712	3,484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2	10	15	4	513
옥외광고발전기금	578	△242	66	309	336
체 육 진 흥 기 금	1,103	△1	17	17	1,1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4,766	△53,930	2,570	56,500	80,836
고 향 사 랑 기 금	0	468	468	0	468

검 토 의 건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당해연도 감소액이 539억으로 대형 사업으로 인한 감소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세입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됨.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556)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260	3,078	2,640	4,699
일반회계	2,728	78	304	2,502
특별회계	1,523	3,000	2,325	2,197
농업발전자금	1,523	3,000	2,325	1,523
기 금	10	0	10	0
사회복지기금	10	0	10	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건

- 전년도 말 잔액은 4,260백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3,078백만원이 발생하고, 2,640백만원 소멸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69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보증금채권 133백만원, 융자금채권 1,531백만원, 기타채권 34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주택융자이고 기타채권은 행정소송 승소금 등임.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562)

- 거창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0원임.
- 2018년도 이후로 채무가 0원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38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85,849 (144,757)	388,320 (144,807)	306,421 (105,501)	67,270 (33,230)	16,438 (6,414)
일 반 회 계		376,466 (144,756)	378,937 (143,305)	297,071 (105,501)	67,270 (33,230)	16,405 (6,413)
특별 회계	발전소	30	30	30	0	0
	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170 (0)	170 (0)	170 (0)	0 (0)	4 (0)
	수질개선	9,182 (1)	9,182 (1)	9,154 (0)	0 (0)	28 (1)

※ ()내는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2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88,320백만원으로, 예산액 385,849백만원이고, 집행액은 306,421백만원으로 67,270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143,305백만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36.9%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3년도 총 세입액은 990,665백만원, 총 세출액은 772,309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18,356백만원임. 세입대비 22%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990,66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1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08,659백만원(31.1%)이고, 보조금 243,535백만원(24.5%), 조정교부금 33,553백만원(3.3%), 지방세는 39,970백만원(4.0%), 세외수입은 37,319백만원(3.7%)으로

- 우리군 재정은 자체자원(7.8%)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자원(59.1%)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772,3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46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157,919백만원, 사회복지 147,475백만원, 국도 및 지역개발 70,645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이며,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47%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일반공공행정으로 32%가 감소하였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80,836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써 현재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 조성액 4,173백만원을 합산한 152,797백만원에서 사용액 58,264백만원을 공제한 94,533백만원임.

-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94,53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54,091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3,930백만원 감소가 주요원인이며 기금 지출액은 152,787백만원으로 기금은 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음.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23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에 해당하는 29,470백만원으로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임. 그 중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정리보류가 전체 1,270건 576백만원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 보류하였으나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 이유가 대부분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11백만원이 증가한 3,715백만원으로,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중 납세태만이 64.9%를 차지함.
- 평가액 부족의 경우 전국 재산 조회 실시하고 대체 압류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